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□ 2019 강서구 하반기 취업박람회



참가대상

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

채용관

참여업체별 현장면접(10개)

참가방법

행사 당일 신분증, 이력서 지참 후 참여 가능

부대행사

취업상담
직업선호도검사
이력서 사진촬영
지문적성검사
면접 이미지메이킹

문의전화

강서구 일자리센터
02-2600-6250, 6519, 6520

주 최  강서구

|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|
| 일시 | 2019. 12. 11.(수) 14:00 ~ 16:00 | | |
| 장소 | 공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(강서구 강서로5길 50) | | |
| 참가대상 |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(사업체)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| | |
| 행사구성 |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| | |
| 주최 | 강서구청 | | |
| 주관 | 강서구 일자리센터 | | |
| 기업신청기간 | 2019. 11. 29.(금) 까지 | 개인신청기간 | 행사당일 참석 |
| 문의처 | 02-2600-6519 | FAX | -- |
| 담당자 | | E-MAIL | @ |
| 사이트(출처) | http://job.seoul.go.kr/gangnam/re/custmr_cntr/ntce/RegionNotice.do?method=getRegionNotice-iceCmmnSeNo=1&fileyn=Y&bbscttSn=13258 | | |

□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확산대전 2019



- 가. 행사명 :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확산대전 2019
- 나. 일시/장소 : 2019.12.12.(목) 11:00~17:00/세종대(서울) 컨벤션센터
- 다. 주요내용 : 공공연구기관(대학) 보유 유망기술 전시 및 채용박람회 기업 현장면접을 통한 `18~`19년 청년TLO 취업연계 지원
- 라. 지원 방법 : 채용박람회 사전 참가신청 및 이력서 제출 등(하기 인터넷 사전면접신청 참조)
 - ※ 사전 접수방법 및 기한 : 2019.12.05(목) 17시까지 온라인 사전신청*
 - * 인터넷 사전 면접 신청 : <http://publictech.kr/>
 - ※ 사전 신청자는 13:30~17:00, 현장 신청자는 11:00~12:00 30분 단위 진행 예정

| | | | |
|---------|---|--|----|
| 일시 | 2019. 12. 12.(목) 11:00~17:00 | | |
| 장소 | 세종대(서울) 컨벤션센터 | | |
| 참가대상 | 박람회 관심있는 청년 | | |
| 행사구성 | 현장면접및 기타 | | |
| 주최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| |
| 주관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| | |
| 기업신청기간 | 개인신청기간 | 2019. 12. 05(목) 17시까지 온라인 사전신청또는 당일 접수 | |
| 문의처 | -- | FAX | -- |
| 담당자 | | E-MAIL | @ |
| 사이트(출처) | http://cafe.naver.com/h2o48/16 | | |

□ 2019 경기도 · 수원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

새로운 경기 > 공정한 세상 | Gyeonggi-do Job Foundation 경기도일자리재단 | 수원시 사랑의 번갈음입니다 휴먼시티 수원

2019 경기도 · 수원시 **중장년** 일자리 박람회

2019. 12. 16. | 월 | 14:00~17:00
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(3F)
문의 : (031) 270-9600
참여기업 65개사

버스승무사원 채용관운영

취업관련 부대행사

직업체험관, 채용관, 창업홍보관, 인생이모작 지원관, 정보관

|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일시 | 2019. 12. 16(월) 14~17시 | | |
| 장소 | 수원컨벤션센터 3층 | | |
| 참가대상 | 구직을 원하는 중장년층 시민(40~60세) | | |
| 행사구성 |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| | |
| 주최 | 경기도일자리재단 | | |
| 주관 | 경기도일자리재단, 수원일자리센터 | | |
| 기업신청기간 | 수원일자리센터 | 개인신청기간 | 행사당일 참석 |
| 문의처 | 031-228-3878 | FAX | 031-228-3274 |
| 담당자 | | E-MAIL | angtae@naver.com |
| 사이트(출처) | 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jobausuwon&logNo=221712431277 | | |

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고용 정책 알리기! “내일을 연결하다”

- 2019년 제2기 청년 고용 정책 대학생 후원단(서포터스) 수료식 및 시상식 개최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「2019년 청년 고용 정책 대학생 후원단(서포터스) 2기 수료식 및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」(이하 후원단 수료식·시상식이라 함)을 11월 29일(금) 오전 10시 30분에 엘더블유(LW)컨벤션 그랜드볼룸(서울 중구 소재)에서 개최했다.
-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청년의 방식으로 청년 고용 정책을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후원단(서포터스)을 지난 8월에 선발*했으며
 - * 응모 인원 653명, 선발 50명(5명·10개 팀, 경쟁률 13:1), 발대식 2019. 8. 9.
- 이날 4개월(8월~11월)의 활동을 마친 2019년 제2기 후원단의 수료식과 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식을 했다.
- 우수 활동 팀은 후원단 간 상호 평가와 활동 실적 평가 등에 따라 정해졌고 최우수팀에는 “엠씨피알(MCPR)팀”(순천향대학교 5명)이 뽑히는 등 총 3개 팀*에 상장이 수여됐다.

- * (1등 팀, 엠씨피알(MCPR): 순천향대 5명) 미디어(Midea)의 ‘엠(M)’과 심폐 소생술(CPR)의 합성어로 청년 고용 정책을 청년들에게 미디어로 심폐 소생 한다는 뜻
 - (활동) 청년 고용 정책 설명회(순천향대), 충남 취창업 카페 내 홍보물 비치, 순천향대학교 일학습병행제 설명회 연계 홍보(순천향대학교), 충남 지역 내 대학 재학생 대상 정책 달력 카드 제작 및 배포(선문대학교, 나사렛대학교), 청년 정책 홍보(천안터미널),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·게시 등
- * (2등 팀, 꽃구름: 성균관대 5명) 무채색을 띠는 구름처럼 아직 본인의 색을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청년 고용 정책을 홍보하여 꽃과 같이 다양한 색을 입혀주겠다는 뜻
 - (활동) 월드잡플러스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 연계 홍보, 잡페어 박람회 연계 홍보(성균관대학교), 청년 고용 정책 홍보 창구 운영(신촌 아리수광장), 성균관대학교 교내 홍보 활동(성균관대), 온라인 정책 홍보 영상 제작·게시
- * (3등 팀, 레이버: 충북대 5명) 수고, 노력, 노동의 ‘레버(labor)’와 포털 사이트 ‘네이버(naver)’의 합성어로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청년들에게 청년 고용 정책을 알리는데 힘쓰겠다는 뜻
 - (활동) 대학일자리센터 공기업 취업 박람회 연계 홍보(충북대), 예비군 대상 정책 홍보 창구(충북대), 충북 청년 주간 연계 홍보 창구 운영(청주시), 충북대학교 학과 설명회, 온라인 정책 홍보 영상 제작·게시 등

□ 2019년 후원단은 상·하반기 각 50명씩을 선발 운영한 바 있고 온 오프라인으로 청년 정책을 알려왔으며 별도의 유튜브 채널 “청년 수다”를 통해 청년 정책 홍보 영상을 참신한 시각으로 제작하여 게시*하였다.

* (2019년) 총 게시물 95개 영상, 20,863건 조회 (11. 26. 기준)

□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정열 청년고용기획과장은 “홍보 방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식은 청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.”라고 하면서

○ “후원단(서포터스)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참신한 생각을 내서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김선영 사무관(☎044-202-74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행사 개요

- 일시 : 2019. 11. 29.(금) 10:30~11:30
- 장소 : 엘더블유(LW)컨벤션센터 (* 서울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)
- 참석자 : 청년 고용 정책 대학생 후원단(서포터스) 2기 50명 및
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등 관계자
- 주요내용
 - 후원단(서포터스) 우수 활동팀 시상 및 수료증 수여
 - 후원단(서포터스) 활동 경과보고 등

□ 행사 일정(안)

| 구 분 | 행사 내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:30~10:35(5분) | ▪ 행사 일정 및 참석자 소개 | ▪ 사회자 ((주)대학내일 파트장) |
| 10:35~10:40(5분) | ▪ 인사말씀 | ▪ 청년고용기획과장 |
| 10:40~10:45(5분) | ▪ 후원단 2기 활동 경과 보고 | ▪ 사회자 |
| 10:45~10:50(5분) | ▪ 후원단 2기 활동 결과 영상 상영 | |
| 10:50~10:55(5분) | ▪ 후원단 2기 수료증 수여 | ▪ 청년고용기획과장 |
| 10:55~11:10(15분) | ▪ 후원단 2기 우수 활동팀 시상 | ▪ 1, 2등: 장관상 ▪ 3등: (주)대학내일 사장상 |
| 11:10~11:25(15분) | ▪ 팀별 소감 발표 | ▪ 10개 팀 각 팀장 |
| 11:25~11:30(5분) | ▪ 단체 사진 촬영 | |
| 11:30~ | ▪ 행사 종료 및 귀가 | |

* 언론 전체 공개

정부,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

- 관계부처 합동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 마련 -
주요 내용: △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△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△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△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(이하 '가이드라인')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*」를 개최하여

* 고용부 차관 주재, 국조실, 기재부, 행안부, 교육부, 인사혁신처 국장 등 참석

○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.

□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

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

○ 공공부문*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·외부 전문가(10명 이내)로 구성하는 『민간위탁 관리위원회』(이하 '관리위원회')를 설치·운영하게 된다.

*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교육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연·출자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

○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,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,

-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.

②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

-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,
 -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*’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.
- * △책정된 임금의 지급, △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, △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, △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
- 또한,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고용상 애로 사항 청취 등을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
 - 근로조건·복지·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게 된다.

③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

-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
 -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고
 -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.

④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

- 그간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,
 -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,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한편,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하여 사무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·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
 - '20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·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
 -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,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,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5 위탁기관의 관리·감독 강화

-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계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·점검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또한,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- 그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
 -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-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“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”라면서
 - “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0년부터 베트남에 우리 워크넷과 닮은 고용서비스 전산망이 운영된다

-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(ODA)를 통한 베트남의 신규 고용서비스 전산망 개발·설치 완료 기념, 하노이에서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 개최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11월 28일 오전 10시에(우리나라 시각 오후 12시), “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”를 열었다.

* 참석: (우리측)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, (베측) Le Van Thangh 차관 등
장소: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본부

- “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”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무상원조 협력사업*으로 추진된 것으로,
 - 우리나라의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(워크넷) 관련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* 2017년~2020년간 총 34억 원 규모 지원,
(1단계, 2억 원) 고용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→ (2단계, 30억 원) 고용서비스 전산망 개발·설치 → (3단계, 2억 원) 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

- 이번 협력사업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사례로서, 양국 간 외교·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
 - 베트남 현지에 7,000개 이상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-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20년 초부터 신규 전산망을 본격 활용할 계획으로,
 - 기존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대국민 통합포털서비스와 다양한 스마트 기기*를 통한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지원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전산망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,
 - 향후 공공 고용서비스 만족도 개선,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실업 문제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- * 베트남 전체 인구 대상 인터넷 보급률 68%, 도시 지역 스마트폰 보급률 72%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2019년 10월)
- 양국 정부는 신규 전산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년 동안 현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.
-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“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개발된 이번 고용서비스 전산망은 양국에 매우 의미가 깊다.”라며 소감을 밝혔다.
 - 또한, “우리 워크넷도 최초 운영된 '98년부터 약 20년의 세월 동안 현재의 일 평균 78만 명이 방문하는 국가 취업지원 포털이 되기 위하여 전산망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.”라고 하면서,
 - “베트남 정부도 해당 전산망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다면 고용노동부로서는 매우 보람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참고 1

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 개요

- (일시) 2019. 11. 28(목), 10:00~11:00 (한국시각으로 12:00~13:00)
- (장소) 베트남 하노이, 노동보훈사회부 본부
- 참석자: 총 20~30명 내외
 - (한국측)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,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, 개발협력지원팀장 등 사업 담당자 및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 등
 - (베트남측) 노동보훈사회부 Le Van Thangh 차관, 고용국 및 하노이·호치민 지역센터 등 소속 사업 담당자, 직업 교육총국, 재무계획처, 과학노동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
- (내용)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개발 및 설치* 완료에 따른 사업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
 - * 對 베트남 무상원조 협력사업으로 2017년~2020년간 총 34억 원 지원
(1단계, 2억 원) 고용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→ (2단계, 30억 원) 고용서비스 전산망 개발·설치 → (3단계, 2억 원) 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
- 일정(안) *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| 시간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0:00~10:05(5분) | ▪ 행사 시작 및 참석자 소개 | · 베트남측 사회자 |
| 10:05~10:20(15분) | ▪ 양측 대표자 인사말 | · 한-베 순차통역 |
| 10:20 ~ 10:40(20분) | ▪ 사업 브리핑 및 전산망 시연 | · 시행사((주)어니컴) PM |
| 10:40 ~ 10:55(15분) | ▪ 양측 고위급 향후 협력강화 등 논의 | |
| 10:55 ~ 11:00(5분) | ▪ 마무리 및 사진촬영 등 | |

□ 추진 배경

- 고용서비스 시스템(워크넷) 구축 경험에 대한 개도국 협력 수요 확대에 따라 핵심협력국가인 베트남*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지원 사업 개시

*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고용법 제정 및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 정책자문(2012년~2015년)에 이어 고용서비스 시스템(워크넷) 구축 경험에 대한 협력 추가 요청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우리나라 대표 전자정부 시스템인 워크넷 구축 경험 공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련 업계 해외 진출 지원
- (사업내용)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 시스템 구축*, 운영역량 강화, 사후관리 지원

※ 1단계(2017년): 고용서비스 전산망 마스터플랜 수립(2억 원) → 2단계(2018년~2019년): 전산망 구축(30억 원) → 3단계(2019년~2020년): 사후관리(2억 원)

*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대국민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① 포털사이트, ② 모바일 서비스망, ③ 내부 업무망 등 개발·설치

□ 기대 효과

- 베트남 고용행정시스템 개선 및 대국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베트남의 고용시장 안정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
- 한국형 고용전산망 구축지원을 통해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및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

2019.11.28.(목), 한국경제 “예산 퍼준다니 너도나도 돈 달라, 밀 빠진 독 된 현금 복지 사업.” 기사 관련

1. 주요 기사내용

- (전략)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,162억원을 증액했으나 그마저도 지난 달 바닥 났다. 올해 배정한 예산을 불과 5개월만에 소진, 지난 8월 추경에서 2,162억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그마저도 2개월 만에 동이 났다.
- (중략)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. 원래는 세명을 고용하여 한명분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채용자는 모두 지원하는 식(30인 미만 기업기준)으로 크게 완화됐다.
- (중략) 장려금을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“애초에 계획돼 있는 채용을 하면서 이왕이면 정부 돈을 받자고 신청하는 것이지 장려금 때문에 추가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(후략)

2. 설명내용

-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
 - *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(전년도 연평균 대비)한 경우 지급
-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.1만여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6.9만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
 - * 2018년 128,275명, 2019년 1~10월 141,489명 추가 채용
- 동 사업은 ‘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요건이 엄격(업종 제한 및 청년 3명 추가 채용)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으며,
 - 특히, ’18년 상반기 들어 청년고용이 위기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‘18년 6월 더욱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’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임

□ 또한, 올해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음('19.8.20)

○ 첫째,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(90→30명)하여 장려금 없이도 채용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의 지원을 줄이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

○ 둘째, 신규 채용한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을 설정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였음.

○ 셋째,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장려금과 무관하게 통상 증가하는 인원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개편하였음

* 30인 이상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,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

○ 넷째, 당해연도 신설 사업장은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사업초기 필수인력까지 장려금 수급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였음

□ 동 장려금의 성과를 살펴보면(고용보험통계), '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('17년)보다 청년을 26.7%(평균 청년채용인원 '17년 7.5명 → '18년 9.5명)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

○ 현장에서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음.

* 18년 참여기업(29,571개사)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

(기업당 청년채용인원) '16년 7.4명 → '17년 7.5명 → '18년 9.5명

(기업당 평균근로자수) '16년 29.9명 → '17년 32.6명 → '18년 37.7명

□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.

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(총 4개소)

| 운영기관명(대표전화) | 운영기관명(대표전화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 |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 |
| 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 |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 |

2019 기업지원제도 안내

1. 일자리안정자금

❖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,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(5인미만 15만원)까지 지원하는 제도

| 구 분 |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|
|-----------------|--|
| 지원대상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원칙)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(주) • (예외로 지원) ①공동주택 경비·청소,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장애인활동지원기관·자활기업·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·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300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자 ③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☞ 지원제외: ①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 초과), ②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③국가 및 공공기관,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(어린이집 등),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, ⑥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(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)으로 퇴직시킨 사업주 |
| 지원가능 근로자 (지원요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(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) *비과세소득: 일·숙직비, 자가운전보조금(월20만원 한도), 월10만원 이하의 식대·경조사금액·자녀보육수당,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(연240만원 한도) • 고용보험 가입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(단,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) •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이상, 기존근로자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☞ 지원제외: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 |
| 지원금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(단,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 지원) ※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|
| 신청서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'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⇒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(별도 신규신청 절차 없음) * 일반사업장은 '19.2.28까지, 공동주택은 '19.1.31까지 제출 ②'19년도 최초로 신청한 사업장 ⇒ 연 1회 신청('19.1.1~12.13)으로 연간 자동 지급 • 고용보험 기성립 :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(안정자금 신청 체크),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• 고용보험 신규성립 : 고용보험성립신고서,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(안정자금 신청 체크),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• 두루누리 사업장: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(두루누리 사업장용) ☞ 근로자 추가 신고: (입사)취득신고서에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, (퇴사)상실신고내역 자동 반영 |
| 신청방법 · 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온라인신청)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, (오프라인신청)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(기업지원과) 방문·우편·팩스 • (지급방법)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• (지급시기) 월 1회 지급(매월 15일) |
| 신청문의 | <p>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://jobfunds.or.kr</p> |

2. 기업지원 사업

○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* 주요지원내용 붙임 참고

| | | |
|---|------------|--|
| 1 | 고용창출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,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(심사형), ③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, ④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, ⑤고용촉진장려금지원, ⑥청년추가고용장려금 |
| 2 | 고용안정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시간선택제 전환지원, ③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|
| 3 | 고용유지지원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고용유지지원금, ②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 |
| 4 |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|

○ 중복지원 사업 대상

| 양 장려금 | 중복 시 | 지원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 | 고용창출장려금 | + 70% 추가지원 |
| | 고용안정장려금 | + 100% 추가지원 |

○ 문의전화: 고용노동부 콜센터 (국번없이) 1350,
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-2171~1800~5, 1833
(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, 8층)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|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|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고창 장려금 출 금 |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| 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3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3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|
| |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| · 근무체계 개편,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10만원 |
| | 국내 복귀 기업 지원 | 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 |
| | 신중년 적합 직무고용지원 | 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|
| |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| 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|
| | 정규직 전환지원 | 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|
| 고안 장려금 정 금 |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| 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 |
| |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| 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 |
| 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| 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 |
| | 고용유지 지원금 | 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 |
| 고유 지 지 원 금 | 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 | |
|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| | ·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 |
| 장년· 고령자 고 용 지 원 금 |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| · 장년 미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(대규모 기업 10%) 한도, 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('18년도 24만원) |
| |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| ·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[지원수준] 근로자: 감액금액의 1/2, 연간 1,080만원 한도(최대 2년), 사업주: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(최대 2년) |